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87호
- 나. 발 의 자 : 한기영의원 외 11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나.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 매년 생활임금 고지일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3. 주요내용

- 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5호).
- 나. 최저임금법 제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해야함(안 제7조제1항).
- 다.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생활임금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서울시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 제도<sup>1)</sup>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1)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노동자를 시작으로 2016년 민간위탁 분야,

- 그러나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당초 목표였던 1만원대의 생활임금이 2019년에 달성된 바,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0,523원, 월 2,199,307원 (월소정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대비 122.5% 수준임.

〈 연도별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현황 〉

(단위 : 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임금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생활임금	6,687	7,145	8,197	9,211	10,148	10,523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안 제5조 제2항 제5호)

- 생활임금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의원 2명,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2017년에는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혜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됨.

-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노사양측의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현재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미 당연직위원 외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 구성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음[참고자료 1].
- 다만 지난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해 조례상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바 있어, 조문의 “근로자단체”는 “노동자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라. 생활임금의 결정·고시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정부의 최저임금이 고시된 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재 최저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임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2].
-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고시일과 생활임금의 의결·고시일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고시 후 생활임금의 결정까지 평균 35.2일이 소요되었음.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의결일 및 고시일 현황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 임금	의결일	‘14.6.27	‘15.7.16	‘16.7.16	‘17.7.15	‘18.7.15	‘19.7.12
	고시일	‘14.8.4	‘15.8.5	‘16.8.5	‘17.8.4	‘18.8.3	‘19.8.5
생활 임금	의결일	‘15.2.13	‘15.9.10	‘16.9.27	‘17.8.29	‘18.9.4	‘19.9.4
	책정시기 (고시일)	‘15.2.26	‘15.9.24	‘16.10.20	‘17.9.21	‘18.10.22	‘19.9.26
최저임금 고시 후 생활임금 의결일 차이		-	36일	53일	25일	32일	30일

- 따라서 개정안의 “최저임금의 고시 후 45일까지”의 생활임금 의결 기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수준인 35일 내의 기한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서울시의 생활임금액 결정 이후 자치구 또한 자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안 편성 이전에 생활임금의 의결과 확정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 [참고자료 1]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현직 및 주요경력	임기
1	 권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li>•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위원장</li> <li>•민주노총 여성위원장</li> </ul>	'18. 8. 14. ~ '20. 8. 13.
2	 권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덕여자대학교 교수</li> <li>•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li> <li>•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li> </ul>	'19. 5. 23. ~ '21. 5. 22.
3	 김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i> <li>•전) 서울특별시시장후보 박원순캠프 노동정책특보</li> <li>•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소장위원회 심사위원장</li> </ul>	'19. 5. 23. ~ '21. 5. 22.
4	 장종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별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li> <li>•전) 법무법인 여는 소속 변호사</li> <li>•사법연수연수료(40기)</li> </ul>	'19. 8. 6. ~ '21. 8. 5.
5	 박용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li> <li>•한양대학교 겸임교수</li> <li>•한국지역고용학회 이사</li> <li>•국가교육회의 위원</li> </ul>	'19. 5. 23. ~ '21. 5. 22.
6	 이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li>•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li> <li>•더불어민주당 중앙의원</li> </ul>	'18. 8. 14. ~ '20. 8. 13.
7	 이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li> <li>•전)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li> <li>•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li> </ul>	'19. 5. 23. ~ '21. 5. 22.
8	 정성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전)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li> </ul>	'19. 5. 23. ~ '21. 5. 22.
9	 홍정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장</li> <li>•전)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정책국장</li> <li>•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본부장</li> </ul>	'19. 5. 23. ~ '21. 5. 22.
10	김혁	•노동정책담당관	재직기간
11	김태명	•예산담당관	재직기간

## [참고자료 2]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